일반논문

1901년 제주민란에 나타난 敎弊와 '物故者'*

**박 찬 식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연구교수

1. 머리말
2. 「三郡敎弊査實成冊」을 통해 본 교폐
3. 「三郡平民敎民物故成冊」을 통해 본 '物故者'
4. 맺음말

[국문요약]

이 논문은 1901년 제주민란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천주교회의 교폐를 집중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당시 교폐를 통해 민란을 둘러싼 제주 지역의 사회와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이 연구를 위해 「三郡敎弊査實成冊」·「旌義郡敎弊卞白大槪」·「三郡平民敎民物故成冊」 등 새로이 발굴한 자료를 검토해 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천주교의 포교에 따라 향촌사회 내부의 기존질서가 크게 흔들렸다.

둘째, 교폐 및 物故者가 집중된 지역은 교회 설립 지역과 화전촌 등이었다. 또한 마을별로 신당을 파괴하거나 주민들에 대한 입교 강요 등으로 인해 제주도민들의 문화적 반감이 확대되어 민란이 발발했다.

셋째, 천주교라는 외래문화의 전래와 사회세력화한 천주교회의 영향력 확대 과정에서 기존의 제주 지역사회의 관습과 문화에 적지 않은 충격과 변화가 초래되었다.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3-074-AM0010).

1. 머리말

1898년 민란('방성칠의 난')이 진정된 지 3년 만에 제주근대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민란('이재수의 난')이 일어났다. 1901년 20세기 벽두에 발생한 제주민란은 대한제국 정부의 봉건적 수탈에 저항한 민란이면서, 천주교로 대표되는 서구열강의 문화적 침탈에 저항한 민중운동으로 평가되고 있다.[1)]

잘 알려져 있듯이, 이 민란의 주요 원인으로는 세금징수의 폐단(稅弊)과 천주교회의 폐단(敎弊)을 들고 있다. 전제군주체제의 강화를 꾀하던 대한제국은 황실재정을 채우기 위하여 內藏院에서 捧稅官 姜鳳憲을 1900년 제주도에 파견하였다. 그는 공유지에 대한 무리한 징세를 하였고, 심지어 어장·그물·소나무·목초지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겼다. 더구나 그는 지금까지 징세를 담당하던 지방관·향리·향임 세력들을 배제하고 독점적인 징세를 함으로써 토착세력과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한편 1899년 두 명의 선교사가 파견됨으로써 전교하기 시작한 제주의 천주교회는 프랑스의 힘을 배경으로 하여 교세를 키워갔다. 이 과정에서 마을의 神堂을 파괴하고 神木을 베어버리는 등 무리한 포교가 이루어져 자주 주민들과 충돌하였다. 1901년 2월 정의군 하효리의 吳信洛 노인이 교당에 끌려가 죽는 사건이 터지면서 주민들의 교회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었다. 더구나 일부 교민들은 봉세관 강봉헌의 중간징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주민들을 더욱 격분하게 하였다. 이러한 세폐와 교폐에 대항하기 위하여 대정군에서는 商務社가 조직되어 교민들과 사사로운 충돌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이 두 가지 폐단 가운데 하나만이 원인이 되었다면 이 민란이 그렇게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봉세관의 징세는 제주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졌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에 대한 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기 때문이다.[2)] 천주교의 교폐로 말미암은 향촌사회에서 官·民 대 교회 사이

1)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아래 두 편의 글이 참고할 만하다.
姜昌一, 「1901年의 濟州島民 抗爭에 대하여」, 『濟州島史硏究』 1, 1991; 金洋植, 「1901年 濟州民亂의 再檢討」, 『濟州島硏究』 6, 1989.

의 충돌 또한 다른 지역에서도 빈발하여, 이들 사건을 당시 신문에서는 '敎案'이라고 지칭할 정도였다. 1899년 江景浦교안, 1901년의 智島교안, 1902~3년의 海西교안 등 굵직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3] 그러나 1901년 제주민란은 위 두 가지 폐단이 결합되었다는 데 주목하여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보지 못한 커다란 규모의 민란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란의 전 도민적 확산이 가능했던 원인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되지 않는다.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세폐 문제가 민란을 촉발시킨 직접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세폐 외에 문화적 갈등 요소가 저변 기층민에게 널리 깔려 있었던 점을 무시할 수 없다. 때문에 필자는 외래문화인 천주교와 토착문화 간의 상호 갈등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한 바 있었다.[4] 이 연구를 통해서 필자는 제주 지역사회 내의 각 계층이 천주교를 자신들의 기반 문화를 무시하고 위협하는 외래문화로 인식하였음을 고찰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문화 갈등이 1901년 제주민란의 전도적 확산을 가져왔고, 전 도민이 교회와 항쟁하는 양상으로 민란이 전개되어간 주요 원인임을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지금까지 연구에서 세폐에 비해서 덜 중요하게 다루어 온 교폐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교폐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 관·민의 입장이 반영된 관련 기록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또한 교폐에 대한 상반된 인식을 보여주는 교회 측의 자료도 잘 남아있어, 당시 민란을 둘러싼 양측의 상반된 견해를 명징하게 드러내 보여준다. 그런데 이들 교폐에 관한 기록에는 단순히 민란의 원인이 되는 내용만이 아니라 당시 양측이 지역사회와 문화를 바라보는 시대상이 담겨 있다. 새로운 사회세력의 대두에 대한 지역의 거부 정서, 외부 문화집단의 입장에서 본 지역의 사회문화상 등이 교폐 내용에 적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1901년 제주민란에서 교폐 문제를 집

2) 金洋植, 「大韓帝國期 驛·屯土에서의 抗租 硏究－內藏院 管理期(1899~1905)를 중심으로」, 『歷史學報』 131, 1991.
3) 박찬식, 『한국 근대 천주교회와 향촌사회』, 한국교회사연구소, 2007.
4) 박찬식, 「한말 천주교와 토착문화의 갈등－1901년 제주교안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9, 2001.

중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민란의 대중적 확산 원인을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제주 지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1901년 제주민란을 연구하는 데 있어 교폐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 察理使 黃耆淵이 작성한 「旌義郡敎弊査實成冊」(이하 「정의군교폐성책」으로 약칭)을 중심으로 교폐 내용을 정리한 필자의 글이 있으나,[5] 상세하게 기록된 교폐를 개괄적인 표로 작성하여 단순하게 이해한 정도에 머물렀다. 또한 교회 측에서 이 교폐 성책에 대한 반박의 형식으로 작성한 「旌義郡敎弊卞白大槪」(이하 「정의군교폐변백」으로 약칭)에 대한 검토는 미처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 과정에서 大靜郡의 교폐 내용과 민란 당시 사망자 명단을 기록한 새로운 자료가 추가 발굴되었다. 2003년 '1901년 제주항쟁기념사업회'에서 민란 당시 대정군의 교폐를 기록한 「大靜郡敎弊査實成冊」(이하 「대정군교폐성책」으로 약칭)과 사망자 317명의 명단이 기록된 「三郡平民敎民物故成冊」(이하 「물고성책」으로 약칭)이 합쳐져 있는 자료를 입수하여 공개했던 것이다.[6] 특히 「물고성책」은 기왕에 밝혀지지 않았던 지역별 사망자의 명단을 기재한 자료로서, 당시 피해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폐와 연관된 사람들의 실상을 추적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 새로이 발굴된 자료를 중심으로 기왕에 검토가 소홀했던 교폐 및 物故者 분석을 통해서 1901년 제주민란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2. 「三郡敎弊査實成冊」을 통해 본 교폐

1) 濟州島民과 관리의 교폐 인식

1899년 선교를 시작한 제주지역의 천주교회는 전교 과정에서 토착문화 담당

5) 박찬식, 앞의 책, 제3장 濟州敎案.
6) 1901년 제주항쟁 기념사업회 엮음, 『신축제주항쟁자료집』 Ⅰ, 도서출판 각, 2003.

계층과 사사건건 대립하였다. 1900년 6월 김원영 신부가 서귀포 한논에 교당을 설립하려 하자 주변마을 향임층이 반발하여 等訴운동을 전개하였고, 상호 대립 과정에서 하효리 주민 吳信洛이 죽는 일이 발생하였다. 교민들이 향임층과 잦은 묘지싸움을 벌이고 射場·書堂田 등을 탈취할 뿐만 아니라, 酺祭 제단을 파괴하여 마을제를 못하게 함으로써, 마을 내 향임들을 자극하기도 하였다.

마을의 神堂을 파괴하고 심방(무당)들의 굿을 방해하는 일이 제주도 거의 모든 마을에서 벌어졌다. 교회는 제주도를 무당의 폐단이 많은 지역으로 보았고, 무당 조직의 致富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게다가 신당과 뱀을 신성시하는 도민들의 정서를 우매하다고까지 보았다. 이러한 극단적인 민간신앙 배격으로 말미암아 도민들의 반천주교 정서가 확산되었다. 민란이 일어나기 전에 교민 문기만이 하천리의 신당에 방화하자, 마을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신당이 불타는 곳에 던져서 태워 죽이려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巫女와 妓女들이 민란의 전면에 나섰던 것도 문화 갈등이 표출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민란 과정에서 한논교당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제주성문이 열리자마자 제주교당의 신상 및 집기 등도 민군에 의해 부서졌다. 이는 교민들의 신당 훼손에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졌다.[7]

이와 같이 민란을 앞두고 발생한 교회의 폐단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인식은 제주지역의 제주·정의·대정군 등 3군 군수의 보고를 토대로 작성한 「濟州牧使 李在禳 報告」[8]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민란 발발 직후인 1901년 5월 10일 제주에 새로 부임한 이재호 목사가 사태를 수습하여 그 결과를 중앙에 보고한 공문서이다.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6월 2일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李庠珪 목사가 해임된 뒤 이재호 목사가 부임할 때까지 제주목사직은 제주군수 金昌洙가 겸임하고 있었다. 따라서 민란이 발발한 직후 사태 처리는 김창수 제주군수의 책임이었고, 진원지였던 대정군수 蔡龜錫의 입장도 중요하였다. 이재호 목사는 부임 직후 김창수 제주군수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채구석

7) 박찬식, 「한말 천주교와 토착문화의 갈등」, 89~95쪽.
8) 『全羅南北來案』, 光武 5년 6월 2일.

대정군수와 金熙胄 정의군수의 보고 또한 참고하였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는 제주목의 세 군수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결론적으로 목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김창수 제주군수는

> 음력 3월 24일(양력 5월 12일) 본직(제주군수 김창수)이 효유하러 먼저 본군에서 백 리 정도 떨어진 두모 마을 등지에 있는 民會所에 가서 사리에 맞게 화해할 뜻으로 마음을 다하여 효유하고 민막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일일이 기록하여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민인들이 올린 소장 내에 수년 전으로부터 봉세관이 잡세를 함부로 거둔 것과 천주교인들이 주민을 침해하고 핍박한 것 등 10여 조가 된다고 하였다.

라고 하여, 민회소에서 작성한 等狀의 내용을 일일이 소개하고 있다. 그 내용 가운데 교폐 관련 부분을 적시하면 아래와 같다.

- 그 하나는 교인이 평민을 무단히 구차 토색하는 것이오,
- 하나는 교인이 사사로이 멋대로 호령하여 평민을 결박하고 잡아가는 것이오,
- 하나는 교인이 마름을 내어 세금을 위협하며 강제로 거두는 것이오,
- 하나는 교인이 敎冊을 억지로 맡겨 위협하며 입교하게 하는 것이오,
- 하나는 교인의 그 교세에 의지하여 남에게 진 빚을 갚지 않는 것이오,
- 하나는 교인이 마을에 횡행하며 神堂을 파괴하고 神木을 작벌하는 것이오,
- 하나는 교인이 다른 사람의 무덤 곁에는 비록 禁制 내일지라도 거리낌 없이 무덤을 쓰고, 교인들의 무덤이면 비록 금제 밖일지라도 남이 무덤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오,

민회소 측은 이러한 교폐 때문에 백성들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므로, 만약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민회를 해산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상의 교폐들은 모두 교회의 힘에 의지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를 정리하면, ① 주민의 재산 탈취, 채무 무시 ② 봉세관 마름으로 나선 교민들의 강제 징세 ③ 교회 입교 강요 ④ 토착신앙 배척 ⑤ 매장 풍습 무시 등으로 요약된다. 주로 경제적인

폐단이 제기되고 있지만, 종교문화적 요인도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民軍의 제주성 입성 후 제주도민의 교폐에 대한 인식은 의미 있게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李在守가 지휘하던 西軍이 신임 李在護 제주목사에게 제출하려고 작성한 아래 等狀 내용에서 엿볼 수 있다.

> 本島의 위급한 사항이 朝夕으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이지만, 이로 인한 폐단을 살펴보면 백 가지나 됩니다. 대략 가장 심한 것만을 말씀드려 간곡하게 그 전말을 개진하니 상세히 살피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捧稅官은 山海草木에서 생산되는 크고 작은 모든 산물에 과세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西敎人들과 체결하여 주인 있는 田畓을 舍音(마름)에게 넘겨주는가 하면 혹은 강탈하고 討索합니다. 또 西敎人들은 가칭 聖學이라 일컬으며 어리석은 백성들을 속이고 유혹합니다. 도당들을 끌어 모아 읍촌을 횡행하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비리를 저지르고, 국법을 어기며 刑獄을 파괴함으로써 관은 명령을 시행할 수 없게 되었고 민은 생명을 보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9]

즉, 봉세관의 세폐와 더불어 두드러진 교폐로서 ① 교민과 봉세관과의 연결에 따른 토지소유권 탈취 ② 교회 입교 강요 ③ 재산 탈취 ④ 관권 무시 등을 들었다. 이 등장은 6월 4일 일본인들(通溪組合聯合會 회원)이 명월에 주둔했던 서군 진영을 방문하여 받아온 것으로서, 5월 28일 제주성에 입성하여 다수의 교민들을 살상한 뒤 원래 주둔지인 명월로 돌아와서 제주목사와의 협상을 기다리던 때 작성해 둔 것이었다. 자신들의 교민 살해에 대한 명분을 강조하기 위해, 교민들을 주민들의 재산권을 빼앗고 관의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국법을 어긴 범법자로 여기고 있다. 정부에서 파견한 봉세관에 저항한 싸움에서 교회와의 전투로 전환한 자신들의 행위를 나라와 백성을 위한 倡義로 보려는 자기정당성의 표출이었다.[10]

---

9) 『三郡都民等等狀』(1901년 4월),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6권, 국사편찬위원회, 1996.

10) 이에 대해 趙景達은 '士' 의식으로 해석한 바 있다. 그는 대한제국 시기에 '士' 의식의 확산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민란에 접근하면서 최고지도자 이재수가 관노 출신이

다음으로 이 민란을 진압하러 중앙에서 제주에 파견된 찰리사 황기연의 보고 내용을 볼 필요가 있다. 황기연은 1901년 6월 10일 제주에 도착하는 대로 즉시 제주성내로 들어갔는데, 會民輩들이 해산하지 않고 동서 양쪽으로 나누어 주둔한 자가 1만 명에 가까웠다. 그는 전후 상황을 상세히 탐문한 결과, 금번 민요가 오로지 봉세관의 濫捧과 교도의 肆虐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판단하고, 봉세관을 구류하는 한편, 유배죄인으로서 교민이 된 이용호・이범주・장윤선 등을 가두었다. 6월 11일 황기연은 鎭衛隊 병력을 성안에 배치시켜 會民을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그는 교민과 봉세관의 폐단을 조사하여 중앙에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이 『皇城新聞』에 게재되었다.[11] 내용 가운데 교폐 관련 부분만 유형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교세에 의지해 관권을 무시, 私刑 실시
- 함부로 인명을 살해하여도 관에서 잡아들여 시신 檢案을 하지 못하게 함
- 사사로이 부녀자를 겁탈하여도 인민들이 입을 열지 못함
- 평민을 영을 내려 잡아들여 결박하고 구타함
- 밤을 틈타 교민 무리를 이끌고 가서 평민의 재물을 빼앗아 감
- 관에서 잡아간 죄인을 교인이라 칭하며 가운데에서 빼앗아 감
- 교인으로 범죄자를 관에서 혹여 잡아들여 가두면 교인 또는 法國人이라 칭하며 무리를 이끌고 와서 감옥을 열고 데리고 가버림
- 교인과 평민이 만약 말싸움이 있으면 선교사에게 말을 하여 교당을 모함한다

라는 데 주목했다. 관노 출신이 '都元帥' 칭호를 썼다든지 최고 장두가 되었던 것은 1894년 동학농민전쟁 때까지는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다. '이재수란'에서는 그 자신이 사 의식을 가지고 난을 지도했다는 것이 확인된다. 당시 이재수는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안경은 선비의 상징적인 장식품이라는 것이다. 이재수는 최후 진술에서 '臣民' 의식을 나타내고, "내가 죽인 것은 '역적'이다"고 하여 황제의 뜻을 받든 정의의 민군으로 자신을 주관화하고 있다. 곧 민군은 民本과 勤皇을 내세운 대한제국의 충실한 선비요 신민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재수란'에서 근대 민족주의를 찾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그보다는 민중에까지 사 의식이 확산되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趙景達, 「大韓帝國期の民亂」, 『朝鮮民衆運動の展開-士の論理と救濟思想』, 岩波書店, 2002).

11) 『皇城新聞』, 光武 5년 6월 21일, <別報> 濟州民擾 察理使 黃耆淵의 報告.

고 하며 무리를 이끌고 가서 잡아들여 형벌을 가함
－형구와 鞭笞, 가두어두는 곳을 사사로이 설치하여 평민을 데리고 와서 형벌을 가하고 가두어 둠
－타인 무덤의 禁制 내에 멋대로 매장하고, 교도의 무덤 주변에는 금제가 아니더라도 嚴禁함

② 봉세관과 교민의 결탁
－봉세관으로부터 마름을 내어 평민이 납세한 토지의 경작권을 빼앗아버림
－봉세관과 함께 세금을 거두는 監色이 되어 금전을 토색함

③ 교세에 의지해 경제적 폐단 일으킴
－오래전에 매매한 토지와 가옥이 시가보다 몇 배 오른 것을 원래 가격으로 억지로 빼앗음
－평민에게 갚아야 할 빚을 갚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미루어버림

④ 敎冊 구입 강요, 입교 강요
－마을을 횡행하며 강제로 교책을 구매하며,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이유 없이 붙들어 사고를 내고 강제로 교책을 구매함

이 교폐 보고 내용을 보면, 앞에서 보았던 이재호 목사의 보고서(6월 2일)와 다른 점이 몇 가지 확인된다. 우선 이재호 목사의 보고서가 3군 민인의 等狀(5월 12일)에 의거했다면, 황기연 찰리사의 보고서는 교민 집단 살해(5월 28일)로부터 보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에 제주목사 등 지방관의 보고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전자가 민란 발발 초기 민인의 입장을 주로 반영하였다면, 후자에는 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 있던 중앙정부와 지방관의 인식이 더 지배적이었다. 때문에 봉세관의 세폐보다 교민들의 교폐를 더 중요한 원인으로 거론하였으며, 교회가 관권을 무시한 내용을 더욱 강조했다. 또한 찰리사 보고서에는 제주도민의 토착신앙 및 문화와 관련된 교폐가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2) 「三郡敎弊査實成冊」과 교폐의 유형

「三郡敎弊査實成冊」은 제주목 관하 제주·정의·대정 3군의 교폐 사실을 조사해서 묶은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민란을 무마시키러 제주도에 왔던 察理使 黃耆淵이 민란 참여자들과 지방관들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하였다.[12] 이들 자료 가운데 현재 「정의군교폐성책」과 「대정군교폐성책」이 각각 따로 보관되어 전해오고 있다.

「정의군교폐성책」에는 정의군의 천주교민들이 행하였던 교폐의 내용이 각 마을(里)별로 178개 조항에 걸쳐서 작성되어 있다. 이 자료는 현재 한국교회사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다.[13] 이 자료에 드러난 정의군 지역 교폐의 유형과 정의군 관내 각 마을별 교폐 발생 건수를 표로 작성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정의군 교폐의 유형

유형 / 건수	경제적 문제						토속신앙 배격	입교 강요	간통사	山訟	私刑	기타	합계
	토지·조세 수탈	어장 수탈	부채 不報	토지매매 폐단	금전 탈취	기타							
소계	39	3	18	26	21	4	29	9	7	5	14	3	178
백분율	21.9	1.7	10.1	14.6	11.8	2.2	16.3	5.1	3.9	2.8	7.9	2.7	100

12) "이 사실을 책으로 만든 것도 난이 끝날 무렵에 이르러 한두 사람이 무고한 사실을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정의군교폐변백」, 제85조) "지금 그 일을 기록하여 올리는 자는 찰리사 황기연이 난민들과 협조하여 교인을 배척하는 때를 틈타 수많은 거짓말과 헛소문으로 그 내용을 꾸며 법관의 눈과 귀를 현혹시켜 교인들에게 해를 끼치려 하였다. 이는 과연 군수 김희주의 허위 기록에서 나왔으나, 김희주 역시 교인들에게는 채구석과 같은 사람이었으니, 그것도 빠진 부분이 많지만 번거로워 다 기재하지 못할 따름이다."(「정의군교폐변백」, 제93조)

13) 뮈텔문서-제주-155 ; 천주교 제주교구, 『신축교안과 제주 천주교회』, 제주 복음 전래 100년사 자료집 제2집, 1997, 51~77쪽. 178조항의 교폐에 대해서는 발생 지역, 대립구도(천주교인-비교인), 교폐의 내용, 교회측의 입장 등으로 나누어 표로 정리한 바 있다(박찬식, 앞의 책, 141~148쪽).

〈표 2〉 정의군 관내 지역별 교폐 발생 건수

역돌	오조	고성	수산	성산	온평	난산	신산	삼달	하천
3	5	6	4	4	5	3	4	1	2
신천	성읍	표선	토산	의귀	보한	우미	예촌	상효	중효
1	5	11	6	4	2	9	2	3	5
신효	하효	보목	토평	동홍	서홍	풍덕	호근	법환	합계
7	14	15	6	5	9	13	17	7	178

한편 『대정군교폐성책』은 한국교회사연구소에 소장된 『정의군교폐성책』, 전해지지 않는 『제주군교폐성책』과 더불어 작성된 것이었다. 이 자료는 현재 1901년 제주항쟁기념사업회에 보관되어 있다. 원래 표지 이면의 제목은 '光武五年五月 日 三郡敎弊査實成冊, 濟州郡'으로 적혀있으나, 나머지 후속 내용은 모두 대정군 교폐에 관련된 것이다. 때문에 이 자료를 『대정군교폐성책』으로 명명함이 옳을 것이다. 『정의군교폐성책』에는 '察理 黃耆淵'이라는 手決이 적혀 있는 데 반해, 『대정군교폐성책』은 공식 수결이 빠져 있다. 그리고 이면지에 기록하였음을 보건대, 이는 제주목에서 초고로 작성한 문서로 보인다.

『대정군교폐성책』 역시 민란을 무마시키러 제주도에 왔던 察理使 黃耆淵이 민란참여자들과 지방관들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3군 가운데 대정군의 천주교민들이 행하였던 교폐의 내용이 각 지역별로 48개 조항에 걸쳐서 작성되어 있다. 이 자료에 드러난 대정군 지역 교폐의 유형과 지역별 교폐 발생 건수를 표로 작성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대정군 교폐의 유형

유형 / 건수	경제적 문제				토속신앙 배격	입교 강요	山訟	私刑	기타	합계
	토지·조세 수탈	토지매매 폐단	부채 不報	금전 탈취						
소계	2	19	5	7	4	7	2	1	1	48
백분율	4.2	39.6	10.4	14.6	8.3	14.6	4.2	2.4	2.4	100

〈표 4〉 대정군 관내 지역별 교폐 발생 건수

색달	상문	창천	상창천	감산	광청	화순	상천	사계	성내
5	3	2	5	2	3	3	1	6	6
상모	하모	일과	무릉	도원					합계
4	1	4	1	1					48

위 표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교폐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정의군 111건, 전체의 62% ; 대정군 33건, 전체의 69%).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교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토지 소유권・경작권의 매매를 둘러싼 분쟁이었다. 지금까지 토지를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한 입장에 있었던 향임층을 비롯한 富民들의 토지를 교민들이 교회의 힘에 의지하여 새로이 헐값으로 매입하거나, 교민들이 예전에 팔았던 토지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값으로 강제 還退시키는 사례가 「교폐성책」에 다수 확인된다. 대정군 지역에서 토지 거래 폐단의 비중이 매우 크게 나타난 것은, 새로이 개간되던 화전・목장전 뿐만 아니라 경작하기 좋은 민유지가 정의군 지역보다 더 많았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교민이 봉세관의 마름이 되어 평민에 대한 징세에 나선 폐단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문제는 민란 전개 과정에서 민군이 교민들을 봉세관의 대리인으로 인식하며 교회에 저항해 나가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되었다. 「교폐성책」에는 봉세소의 마름으로 직접 나서거나 봉세관과 결탁하여 마름들을 동원시킨 교민들의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14]

경제적인 문제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교폐는 신당을 파괴하거나 神木(禁養木이라고도 함)을 작벌하고 굿을 방해하는 등 무속신앙을 부정하는 문화적 충돌로 인해 발생했다. 나아가 유교식 마을 제사 터전인 포제단을 부수는 사례도 확인된다(「정의군교폐성책」 제92조). 하효리 마을의 오신락 노인 사망 사건도 그 근저에는 외래종교 천주교의 마을 포교를 막고자 했던 토착문화의 거부정서가 작용하였다. 山訟이나 간통 문제 또한 문화적 요인으로 해석된다. 정

14) 이기선・고인관・강기순・이향근・김신효・김성진・박봉오・이석홍・박봉옥・최재홍・강희진・신영희・홍남일(도마름, 都舍音)・홍순병・오치헌・이정표 등이 「정의군교폐성책」에, 나운경・안성권・부영철・강지만 등이 「대정군교폐성책」에 나타나 있다.

의군 지역의 문화 충돌 사례가 대정군보다 많은 사실은 제주도 동남부에 위치한 정의군 지역의 토속신앙이 강했던 까닭으로 이해된다. 정의군의 경우 거의 모든 마을에서 교민들의 신당 파괴가 행해졌다.

교폐 발생의 지역별 특성을 보면, 우선 정의군 관내 교폐 발생 건수가 대정군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1901년 제주민란의 진원지였던 정의교당의 위치가 정의군 호근리 한논 마을이었기 때문이다. 민란 직전에 정의군 관내 교민 수가 483명(신자 101명, 예비신자 382명), 대정군 관내 교민 수가 274명(신자 36명, 예비신자 238명)임을 감안할 때 교폐의 상당수가 정의군에서 발생한 것은 당연하다. 「정의군교폐성책」에도 보이듯이, 정의군에서는 교당 설립 반대로부터 오신락 노인 사망 사건에 이르기까지 敎・民 간 심각한 갈등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정작 민란이 처음 일어난 곳은 대정군 지역이었다. 대정군 내에서는 商務社員와 교민 간에 싸움이 발생하긴 했지만, 이것이 민란의 직접 계기는 아니었다. 민란이 일어날 때 분명히 민회소 측에서 제기했던 것은 봉세관의 세폐 시정 요구였다. 즉, 이는 민란의 시점에 화전세 과다 징수를 비롯한 세폐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지, 교폐는 부수적인 문제였음을 시사한다.

한편 교폐가 많이 발생한 마을들을 보면, 정의군에서는 호근/보목/하효/풍덕리 등 한논교당과 가까운 마을임을 알 수 있다. 호근리는 한논교당이 위치한 곳이고, 하효리는 오신락 사건이 일어난 곳으로서, 교회 세력이 가장 강했던 곳이며, 교회에 대한 반대 움직임도 격렬했던 마을이다. 다음으로 대정군에서는 색달/상창천/광청/상문리 등에서 교폐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들 지역은 화전촌 마을로서, 화전・목장전을 둘러싼 경작권 분쟁이 심각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1901년 민란이 대정군의 화전촌 광청리를 중심으로 발발했던 1862~1863년 민란, 1898년 남학당의 민란과 연속선상에서 발발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3) 교폐의 문화사적 의미

1901년 제주민란에서 교폐 문제는 민란의 원인을 규명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다양한 관점에서 그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창 역할을 한다. 교회의

제주사회와 문화에 대한 인식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민란을 전후하여 외부세력과 외부문화의 이입에 따라 제주 사회 내부의 관습과 관행은 심각한 외적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외적 요소의 파급에 따라 사회 내부의 분화 양상이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제주 토착사회가 천주교 포교활동에서 불거진 갈등 사실을 폐단으로 인식했다는 것은 역으로 교회가 제주의 문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던 것을 말한다. 결국 교폐 문제를 통해 당시 제주지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의군교폐변백」이 갖는 사료적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위에서 보았던 「정의군교폐성책」에 진술된 교폐의 내용에 대하여 교회 측에서 반박한 기록이다. 「정의군교폐성책」이 178조항의 교폐를 단순 나열식으로 적시했다면, 「정의군교폐변백」은 쟁점이 되는 조항에 대해 제주도의 풍속, 관습, 관행, 규정 및 관련된 사람들의 행적·동향 등을 언급하며, 그에 대한 교회의 인식을 적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자료는 1900년 초 김원영 신부가 천주교 교리에 입각하여 제주도의 여러 풍속을 교정하기 위하여 작성한 『修身靈藥』과 더불어 20세기 초 제주의 사회·문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15] 때문에 지난 연구에서 수행하지 못한 이 자료를 중심으로 교폐와 끈을 맺고 있는 여러 사회문화적 현상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① 기존 세금징수 방식의 무시

교민 가운데 捧稅所의 마름이 되어 세금 징수에 나섬으로써 민란 참여자들이 봉세관과 결탁한 교회를 배격했다는 점은 기존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16] 봉세관의 징세권 독점은 지금까지 <지방관－향리－향임> 주도의 수세 관행을 무시하는 것이었다. 라크루 신부는 민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봉세관의

15) 『수신영약』을 중심으로 천주교와 토착문화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로는 다음의 글이 참고할 만하다.
박찬식, 「한말 천주교회와 토착문화의 갈등」; 박일영, 「구한말 토착 종교와 가톨릭의 만남－『수신영약』(1900)을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 100년 속의 가톨릭교회』(상), 가톨릭출판사, 2003.

16) 박찬식, 앞의 책, 117~119쪽.

독점적 징세 방식으로 인해 제주도 내의 유력한 향리·향임층의 기득권을 빼앗아 버린 때문으로 보았다.[17]

봉세관의 징세에 교민들이 가담한 것은 제주지역 내 토착지배층뿐만 아니라 기층민들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대한 반감을 확산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교민 李己善의 경우, 교회 입교를 계기로 봉세소의 마름직을 취득하여 역돌리 射場의 소유권을 갖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 마을의 洞任과 갈등을 빚었다.[18] 대정군의 商務社 또한 봉세관과 교회 중심의 경제적 이권 개입에 대응한 조직이었다.[19] 결국 세금 징수와 관련된 교폐 문제는 세금 징수를 둘러싼 제주지역 내 신구세력 간 갈등의 표출 결과였다.

뮈텔 주교의 아래 보고서는 이러한 징세 방식의 변화를 교회 측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다.

> "1900년 이 섬에서는 군수와 목사가 세금 징수의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度支部는 섬의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상태임을 보고 특별 세금징수원(봉세관) 한 명을 섬에 보냈다. 사람들은 그가 공정하고 정직한 사람인 것처럼 늘 내게 얘기했다. 그야 어쨌든 이 봉세관(강봉헌)은 몇몇 신자들에게 어떤 형태들의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주로 이 봉세관에 반대하여 일어났으나 천주교도들에게도 타격을 가한 현 폭동의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하고 염려하고 있다. 이 봉세관의 그러한 행동은 더할 나위 없이 섬의 군수와 목사들에게 불쾌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이러한 기회에 얻는 수입의 대부분을 그들로부터 앗아 갔으니까. 이 때문에 이제는 아마도 저지할 수 없을지도 모를 동요를 스스로 폭발시키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20]

---

17) 라크루 신부의 보고서, 1901년 6월 11일(천주교 제주교구, 『초기 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1)』, 제주 복음 전래 100년사 자료집 제3집, 1997, 89쪽).
18) 「정의군교폐변백」, 제1조.
19) 박찬식, 앞의 책, 121~122쪽.
20) 뮈텔 주교의 보고서, 1901년 5월 26일(천주교 제주교구, 『초기 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2)』, 제주 복음 전래 100년사 자료집 제4집, 1997, 207쪽).

즉, 교민들에 대한 면세 혜택 부여로 인해 지금까지 징세 관행이 무너지고 경제적 기득권을 상실한 것에 대한 반감이 민란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교회 측에서 교민의 봉세소 마름 기용 사실을 감췄던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지만, 기존의 징세 관행과 규정을 교회가 무시했던 것은 당시로서는 토착세력이 받아들이기 힘든 변화였다.

② 空帖 작성에 따른 금품 수수의 폐단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제주민들은 군역・잡역의 대가로 매년 2냥씩을 부담하였다. 일반 평민들은 이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將校나 鄕任의 空名帖을 지방관아의 향리로부터 사들였다. 제주목의 향리들은 교체될 때마다 공명첩 수백 장에 몰래 도장을 찍어 새로이 명분상의 향임・향리・향교직을 남발하였다. 그리고 그 대가로 평민들로부터 금전을 수수하였는데,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까지 이름을 기재하여 억지로 돈을 빼앗는 사례도 빈발하였다.[21] 1899년 朴用元 제주목사가 면직되기 직전에 제주목 관청에서는 63개의 좌수직을 강제로 100냥 또는 200냥에 팔았다.[22] 1906년의 자료에 따르면, 향임직의 경우 別監 400냥, 座首 200냥, 향교직은 訓長 200냥, 掌議 100냥, 有司 50냥으로 정가가 매겨져 있었다.[23] 그 결과 1898년 대정군 중문리 전체 인구 210명 가운데 115명이, 동성리 전체 163명 가운데 54명이 장의 직역자로 나타나고 있다.

「정의군교폐변백」(제7조)에 따르면, 교민 홍신규는 그의 부친 때 향리 송성은으로부터 공명첩을 받았으나 그 대금을 갚지 못해 가옥과 집터를 빼앗겼다. 이 문제 때문에 홍신규의 부친은 병이 들었고, 자식에게 관청에 가서라도 해결할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죽었다. 이후 천주교회에 입교한 홍신규는 교회의 힘에 의지하여 송성은에게서 예전에 내다판 가옥과 집터를 본래 가격으로 되찾게 되었다. 이 때문에 홍신규를 비호해준 교회측은 향리 송성은과 대립하게

21) 「정의군교폐변백」, 제7조.
22) 김원영 신부의 서한, 1899년 10월 29일(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초기 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2)』, 55쪽).
23) 神谷 財務官, 『濟州島現況一般』, 1906.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단순한 교폐가 아니라 당시 제주사회에 만연해 있던 사회 관행을 깨뜨린 것이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토착지배세력은 자신들 중심의 지역권력 구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여갔다.

③ 신당 파괴, 신목 작벌, 무당계 조직에 대한 문제

교회 측에서는 제주의 무속신앙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김원영 신부의 『수신영약』에는 제주지역 토착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민간 무속신앙과 각종 제례를 22가지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이를 이단으로 규정하여 배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24] 「정의군교폐변백」에도 제주의 무속문화를 비판하는 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록되었다.

"제주는 원래 무당의 폐단이 많고, 兎山에서 더욱 심하다. 그 중에서 하나의 큰 무당이 3군의 여러 무당을 이끌고 있으며, 별도로 하나의 큰 계모임을 만들었다. 이 때문에 저 큰 무당은 1년 동안의 의례적 이자가 수천 수백 금에 이르는데, 이것을 여러 무당에게 주어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우매한 백성들을 유혹케 하고 속이게 한다. 神堂이라고 하는 것은 요사한 무당이 혹은 수풀을 지정하여 당집이라 하고, 혹은 괴상한 돌을 놓고 당집이라 하고, 혹은 궁벽한 계곡을 잘 다듬어 상을 차려 놓고, 혹은 살무사와 뱀을 가리켜 조상이니 어머니이니 하면서 아침저녁으로 향을 피우고 공궤하며 이르기를 영험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매한 저 부녀자들이 신과 악귀는 구분이 있으며, 화복에는 문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게 장생한다는 것과 액운을 헤아린다는 요사스러운 말을 믿어서 뱀을 공경하고 당집을 숭배하는 것에 재산을 바치고 생업을 팽개쳐 어찌할 방향을 모르는 자가 매우 많게 되었다."

즉, 교회가 제주의 무속을 이단으로 비판하는 내용 중에 무당들의 조직인 계모임이 매우 강한 세력을 형성했었고,[25] 신당의 실태가 어떠했는지를 잘 드

24) 김원영, 『수신영약』, 제25항, 제주 각 이단.
25) 제주도 무당은 흔히 '심방'이라고 부르는데, 상당수의 무당들이 존재하였다. 조선 숙종

러내 보여 주고 있다. 신당과 신목은 단순한 미신의 대상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聖域 또는 성스러운 상징으로서 갖는 신앙 숭배의 의미가 강한 것이었다. 정의군 하천리 문기만이 신당에 방화하다가 마을 주민들에게 잡혔는데, 주민들이 그를 불 속에 던져 죽이려고 했던 것은 제주민의 토착 무속신앙이 강력한 문화로 지속되었음을 보여준다. 자신들의 신앙 기반을 파괴한 것은 존재와 생명의 근거를 앗아버리는 것과 동일시되었다. 그러기에 민란 과정에서 제주성문을 열어젖혀 민군을 입성하게 했던 제주성안의 여인 장두 18명 가운데 특히 무녀들이 앞장섰던 것이다. 이들은 천주교를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외래문화로 인식했다.[26]

④ 혼인 문제를 둘러싼 갈등

제주지역의 천주교회는 선교 과정에서 혼인 생활 풍속의 복잡함과 특수성 때문에 혼선을 빚었다. 조선시대 이래로 女多의 인구 실태가 빚어낸 축첩 문화와 촌락내혼과 같은 통혼권의 폐쇄성 때문에 여러 신부들은 교리와 상충되는 사람들을 신자로 삼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27] 김원영 신부는 "한 남자가 4~5명의 첩을 맞아들이는 이가 허다하며, 마음대로 본처를 구박하는 일이 흔

때 제주도 129군데 신당을 모두 없애버린 이형상 목사는 제주도 무당의 숫자가 1천 명을 넘는다고 하였다. 이는 같은 시기 경상도 단성현의 경우 10명 정도였음에 비추어 보면 엄청난 인원이다. 숙종 때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죽이기 위해 무녀를 동원해 궁궐 내에 신당을 설치한 바 있는데, 이때 무녀들이 제주에서 가져온 巫術에 관한 책과 도구를 사용했다고 한다. 그만큼 제주도 무교의 영향력이 컸음을 말하여 준다. 제주의 무당들은 그들끼리 契 조직을 결성하였고, 향리 조직과도 일정한 연대를 갖고 있었다. 헌종 7년(1841) 이원조 목사가 남긴 '입춘굿' 기록을 보면, 농경의례를 향리 집단이 주관하고 있었으며, 의례 행렬의 맨 앞에는 무당들이 나서 전체를 이끌었다고 한다.

26) 박찬식, 「한말 천주교와 토착문화의 갈등」, 93~95쪽.

27) 19세기 제주도의 혼인 양상을 다룬 논문으로는 다음의 글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이창기, 「19세기말 제주도 농촌마을의 혼인양상 : 1897년 덕수리 호적중초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14, 1997; 권오정, 「19세기 제주도 촌락의 촌락내혼율과 촌락 내 혼인관계 연구－제주 대정현 사계리 호적중초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23, 2003). 이창기의 연구에 의하면, 19세기 말에도 제주도에는 축첩이 많이 행해지고 있었고, 정처에 비해서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혼인 관행의 하나로 정착했다. 또한 촌락내혼이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혼인 양식으로 보편화되어 있었다.

하다"고 하였다.[28] 때문에 그는 『수신영약』에 제18항(내외유분별), 제19항(혼배), 제20항(첩을 불취), 제21항(주색잡기) 등 4개 조항이나 할애하여 제주지역 혼인 풍속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정의군교폐변백」에는 남편을 바꾸거나 버린 자에 대한 본보기로 마을에서 돈을 토색하는 풍속이 있어 왔다고 소개하였다. 이러한 풍속은 제주 혼인 문화의 복잡성을 드러내 주는 근거라고 하겠다. 이 때문에 간통 등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의도적으로 입교하는 경우가 많게 되었다. 「정의군교폐성책」에 따르면, 입교 전에 간통 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민이 된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29]

이 때문에 교회는 혼인 생활이 문란한 사람들의 피신처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었다. 교회는 제주의 혼인 문화에 대해 교리 원칙에 따라 배척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용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띠었다.[30] 이러한 교회의 태도 때문에 토착지배세력은 교회를 자신들의 축첩문화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기층민들에게는 마을공동체 문화를 위협하는 집단으로 천주교회를 인식하게 만들었다.

---

28) 김원영, 『수신영약』, 제21항, 주색잡기.

29) 교민 이기선의 사례(제11조), 오시평의 사례(제15조), 오치효의 사례(제24조), 임재득의 사례(제71조).

30) 페네 신부의 다음 서한(1899년 10월 31일)에서 이러한 사례를 엿볼 수 있다. "오씨라는 성을 가진 64세의 한 예비자는 합법적인 아내를 내쫓고 다른 아내를 맞이했고 그런 뒤에 또 자기 자신의 본처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남편이 살아 있는 또 다른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지금 50여 살인 둘째 부인에게서 두 딸을 얻었는데, 이들은 다른 곳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른바 둘째 부인의 본남편이 죽었습니다. 현재 36세인 셋째 부인에게서 1남 2녀를 얻었는데, 이 여인의 본남편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 예비자의 합법적인 아내는 벌써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 이 모든 진술을 듣고 저는 그가 현재 데리고 있는 두 아내들 중에서 아무도 합법적이 아닌 만큼 다처제에 관한 교회의 교리를 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두 여인들을 모두 내보내고 싶지만, 그들 중 한 아내는 데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아들과 다른 어린 자식들의 어머니이며 또 더 젊다는 이점도 있으니까 셋째 아내를 선택하기로 했다고 제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했으나 이 여자에게 알려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에게 일렀습니다."

⑤ 마을 공동체의 내분

「교폐성책」의 내용 가운데 토지 매매를 둘러싼 폐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교회세력에 의지해 새로이 입교한 교민들이 예전에 불리하게 팔았던 토지를 헐값으로 還退시키는 사례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더 나아가 토지의 소유권과 경작권을 강제로 탈취해버리는 일도 빈발했다. 이는 토지·재산을 둘러싼 기존 관행 또는 관의 법적 처리를 무시하는 것이었다.

토지 및 재산을 둘러싼 마을 주민 사이의 분쟁은 친족 내부의 분열로까지 발전하였다. 민란을 전후하여 발생한 하효리 군위오씨 가문 내부의 대립(오신락 사망 사건), 하모리 고부이씨 가문의 갈등(이재수가 이규석 부자를 살해)이 대표적이다.[31]

「정의군교폐변백」(제125조)에는 친척 사이인 평민 오성도와 교민 오인표 간에 소 매매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사례가 확인된다.

또한 예전부터 내재해 왔던 마을 간 갈등 요소가 교회를 둘러싼 싸움으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정의군교폐변백」에는 정의군 보한리의 마을 공동어장을 둘러싼 갈등에 교회가 개입하였던 사례가 기록되었다. 이 자료에는 제주도 연근해 마을 공동어장의 경계 지역에서 자주 소송이 발생했으며, 목사나 군수가 이로 인해 뇌물을 받는 관행이 있었음을 적시하였다. 동보한리와 서보한리 사이에 공동어장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는데, 마을의 공동어장은 항상 서보한리에 사는 세력 있는 사람들이 차지했기 때문에 동보한리 주민들은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동보한리 주민 오영신이 교회에 입교하자 교세에 의지하여 어장의 이윤을 독점하게 되자, 서보한리 사람들이 이를 교폐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교회세력의 파급에 따라 기존의 마을 간 세력 구도가 역전된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⑦ 山訟의 문제

교폐 가운데 산송 문제는 토지 부족 문제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 한라산과

31) 박찬식, 「한말 천주교와 토착문화의 갈등」, 95쪽.

해안 사이의 광활한 목초지대는 1894년까지 國馬場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제도적·현실적으로 사유화하기 힘들었다. 그러므로 제주도민들은 묘지가 경작지 한가운데 들어서 있거나 묘지 주위를 개간하여 밭으로 만든 경우가 많았다.[32] 中山 지대(한라산과 해안 사이 목초지)에 무덤을 쓸 경우에는 관과의 뇌물 거래가 관행이 되었다. 「정의군교폐변백」(제87조)에는,

> 제주도의 소송 사건 가운데 山訟은 내륙지방에 비해 매우 심하다. 섬의 위쪽으로는 산림이 빽빽이 들어서 있고, 섬의 아래쪽에는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낼 때에는 中山 등의 장소가 묘지로 활용된다. 그런데 부자들은 뇌물을 주어 넓은 땅을 차지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소송에 져서 이장을 해야 할 처지가 되곤 한다. 이 때문에 중산 지대에는 묘지를 쓰지 못하게 금지하고 정해진 구역 내에서만 장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이와 같은 관행이 모두 목사·군수·鄕將·서리에게 뇌물을 주는 통로가 되었다.

라고 하여, 부민들이 토지를 매입하여 묘지를 넓게 차지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관에서 중산지대 禁葬을 실시하였는데, 오히려 관에 뇌물을 바쳐서 장지를 확보하는 관행이 생겼던 것이다. 그러나 교민들은 교회세력을 등지고 금지된 중산지대 내에서 거리낌 없이 묘지를 확보함으로써, 관·민과 대립하게 되었다. 즉, 교회가 기존의 제도와 관행을 무시하는 데서 나아가 관과 토착세력의 묘지를 둘러싼 이권에 개입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교민들은 평민들의 묘지 가까이에서 개간을 함으로써 묘지 소유주와 대립하기도 하였다.

⑧ 지방군의 공백

「정의군교폐성책」에는 西歸鎭將 許俊이 입교하여 많은 교폐를 일으켰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의 「정의군교폐변백」에는 허준이 예비신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교인으로서의 도리와 분수를 지키지 못하므로 외교인과 다

32) 「정의군교폐변백」, 제89조.

를 바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진장 관직의 폐단을 아래와 같이 적시하였다.

"원래 제주도에는 3개 군에 9명의 鎭將이 있으며, 각 진에는 각 里를 검찰하는 권리가 있었다. 처음에는 매달 녹봉을 마련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의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나치게 많았다. 반년이 채 못 되어 교체되어 버리니, 제주의 진장이 되면 체임되기 전에 토색질, 간음, 도둑질 등에 간여하는 경우가 많았다."[33]

즉, 허준의 교폐를 앞세우기 전에 진장을 비롯한 관리들의 폐단을 먼저 꼬집고 있다. 나아가 진장의 폐단은 "실제로 목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탐내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진장이 행한 교폐 사실의 이면에는 당시 제주도의 지방관들의 폐단 또한 들어있었던 것이며, 이를 통해 유명무실한 지방군의 실정을 엿볼 수 있다.[34]

때문에 제주목을 비롯한 3군 관아에서 군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찾아볼 수 없었고, 무기고 관리는 매우 허술할 수밖에 없었다. 민란의 전개 과정에서 교민들이 대정군과 제주목 관아의 무기고를 허물어서 무장한 뒤 발포하고, 제주성에 포를 설치하여 오랫동안 민군과 대치했던 것은 지방군 체계의 붕괴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35]

---

33) 「정의군교폐변백」, 제134조.

34) 민란 이후 1905년에 작성된 다음 자료는 당시 제주도 지방군제 관련 관직의 실상을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다. "萬戶, 別將, 鎭將 명색은 새 규식에는 원래 없는 것이거늘, 본 섬의 九鎭은 옛날처럼 오히려 남아 있어 뇌물을 받는 데 침을 흘리며 탐닉하고, 가칭 순검이라 하면서 뇌물을 거두는 것을 번갈아 하여 곧 고질적인 병폐가 되었습니다. 진장의 해독이 시골 백성들에게 흘러들어 글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뮈텔문서 -1905-60, 1905년 7월; 한국교회사연구소, 『신축교안과 제주 천주교회』, 283쪽).

35) 1895년 윤5월에 중앙정부의 명령에 따라 전국 外營의 군병이 해방되고, 봉수가 폐지되었다. 민란 2년 전인 1899년 『大靜郡古誌』와 『旌義郡古誌』에는 모두 '軍兵 無'라고 기록하여, 당시 제주의 군병 편제가 혁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許元寧, 『19세기 濟州島의 戶口와 賦稅運營』, 韓國學中央硏究院 韓國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6, 197~198쪽).

3. 「三郡平民敎民物故成冊」을 통해 본 '物故者'

이번에 발견된 「三郡平民敎民物故成冊」은 민란의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명단을 수록한 명부로서, 제주목에서 平理院 安鍾悳 검사에게 보고한 문서이다. 안종덕이 뮈텔 주교에게 보낸 서한을 보면, 「濟民物故成冊」이 평리원에 도착했다는 내용이 확인되는데,[36] 바로 이 책을 말한다.

이 「물고성책」을 보면, 사망자 수는 도합 317명으로서, 교민이 309명, 평민이 8명이다. 그 중 남자는 305명, 여자는 12명이다. 이는 당시 제주에 파견된 안종덕 검사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숫자인 교민 309명, 평민 8명과 일치한다.[37] 그러나 자료를 자세히 검토해 보면, 실제 작성된 수는 교민 308명, 평민 8명으로서 합계 316명이 맞다. 제주군 36개 리에서 93명, 대정군 26개 리에서 81명, 정의군 28개 리에서 142명이 확인된다.[38]

지금까지 1901년 제주민란 과정에서 사망한 전체 인원 및 명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천주교회 측에서는 한논교당 세례대장에 나타난 사망자 일부 명단을 갖고 있었으나, 세례명만 표시되어 있어 실명 확인이 어려웠다.[39] 또한 이재수·오대현·강우백 등 세 장두는 1901년 10월 10일 처형되었지만, 나머지 민군 가담자 가운데 사망자 명단은 처음 알려지는 것이다. 한편 지역별 사망자 수가 소상히 밝혀져 있어, 당시 천주교가 각 지역으로 넓게 확산 보급되었음이 확인된다.[40]

1901년 제주민란 당시 민군과 교회 측 사이에 제주성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

36) 뮈텔문서-제주-72(1901. 9); 천주교 제주교구, 『신축교안과 제주 천주교회』, 182~183쪽.
37) 주 36)과 같음.
38) 구체적인 명단은 주 6)의 『신축제주항쟁자료집』에 수록된 원본을 참고하기 바란다.
39) 박찬식, 앞의 책, 137~140쪽의 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40) 이 자료의 발굴로 인해 앞으로 1901년 민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가능해질 것이며, 제주지역의 근대 사회사를 연구하는 데도 귀중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향후 마을별 호적 등 고문서와 대비하여 구체적인 검토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물고성책」은 기왕에 밝혀지지 않았던 지역별 사망자의 명단을 기재한 자료로서, 당시 피해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폐와 연관된 사람들의 실상을 추적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공방이 전개되었고, 그 결과 민군과 교민 쌍방 간에 수백 명이 희생되었다. 당시 민란의 과정에서 피살된 자들은 대부분 교민들이었다. 당시 전체 희생자 수에 대해서는 교회 측에서는 대체로 500~700명 정도로 보았고, 제주에 유배와 있던 김윤식은 500~600명으로 보았다. 민군 지도자 이재수가 일본인들에게 언급한 바에 따르면, 살해당한 교민은 600명에 달하며 도민은 20명 내외였다.[41] 고종 황제의 고문관 샌즈가 상경하여 고종에게 보고한 수는 쌍방 간 300명으로서,[42] 『물고성책』과 비슷한 수치이다.

그런데 제주민란이 진정된 1902년 제주에 남아 있던 교민 강인봉이 남긴 서한에 따르면, 교민들 중에 피살된 자가 350~360명이라 하였다.[43] 민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교회 측에서 희생자 수를 과장시켰을 것이라고 추정한다면, 1년이 지난 뒤 교민이 언급한 이 숫자는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래 표에서 보듯이, 『물고성책』에 보이지 않는 교민 피살자 46명이 다른 자료에서 확인되는데, 『물고성책』의 교민 희생자 308명과 합치면 354명이 된다. 따라서 강인봉이 파악한 희생자 수가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표 5〉『물고성책』에 누락된 피살 교민 명단

번 호	이 름	주 거 지	가 해 자
1	신재순	제주	고윤, 신마제(서문)
2	윤중삼	제주성내	삼도경민장 이원방
3	고흥주	제주성내	삼도경민장 이원방
4	김원출		신성수(서문밖)
5	홍장선 형제(2)		종달리 군졸
6	박고스마	정의교당	
7	김다묵	정의 호근(한논)	조사성
8	태명순	정의 호근(한논)	
9	신명조	정의 호근	호근리 오평국 등
10	오달현	정의	

41) 국사편찬위원회,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6권, 1996.
42) 『皇城新聞』, 1901년 6월 17일.
43) 뮈텔문서-제주-76(1902. 2); 천주교 제주교구, 『신축교안과 제주 천주교회』, 188~189쪽.

11	오인표	정의	
12	오시관		강봉회 등(역돌)
13	김정옥	대정 화순	중문 동임 등
14	강윤이	대정 도순	도순 5소임
15	박명사	대정 도문	도문 경민장 등
16	김천총 아들	대정 도문	도문 경민장 등
17	강찬규	대정 색달	
18	강찬규 아들	대정 색달	두민 강상호 등
19	김주백	대정 색달	색달 5소임
20	강진만	대정 색달	색달 5소임
21	조명관	대정 중문	중문 동임 등
22	김순백	대정 중문	중문 동임 등
23	장두호	대정 중문	중문 동임 등
24	현유성	대정 중문	중문 동임 등
25	김사진	대정 중문	중문 동임 등
26	임재봉	대정 중문	중문 동임 등
27	김召史	대정	중문 동임 등
28	현인수	대정 중문	좌수 이형백 등
29	장만조	대정 창천	창천 기찰장
30	장만조 자	대정 창천	창천 기찰장
31	김원보	대정 창천	창천 기찰장
32	김병규	대정 상모	기찰장 고필득
33	정시송	대정 상모	경민장
34	이규석 두 아들(2)	대정 하모	5소임 등
35	김정협	대정 도원	경민장/기찰 등
36	김달백	대정 읍내	장열규
37	김달백 처, 두 아들(3)	대정 읍내	
38	김사길	대정 읍내	오인봉
39	김달복 처, 두 아들(3)	대정 인성	5소임
40	차재유의 처, 아들(2)	대정 인성	5소임
41	김관칠		강재봉(상문)

(출전 - 「濟州牧大靜郡各里亂民作弊大概成冊」<뮈텔문서-제주-69> ; 「濟州牧大靜郡各里亂民作弊略抄」<뮈텔문서-제주-69> ; 「濟州民亂殺人者姓名居住列錄」<뮈텔문서-제주-134> ; 「濟州民亂時의 加害主動者列錄」<뮈텔문서-제주-146>)

이상에서 정리한 「물고성책」과 기타 문서에 나온 물고자(사망자) 수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6〉 지역별 교민 물고자 수

제주군	행원	평대	하도	종달	연평	송당	조천	선흘	대흘	일도
	1	1	2	2(1)	5	1	1	1	5	1
	이도	삼도	건입	도련	오등	도남	오라	노형	용담	구엄
	3	12(5)	2	1	1	2	1	3	1	1
	신엄	애월	곽지	어음	납읍	하가	광령	한림	덕포	배령
	3	1	1	1	1	2	7	1	1	2
	두모	고산	저지	소룡	금악	상명				합계
	3	8	1	1	11	1				92(6)
정의군	역돌	오조	성산	난산	신산	신천	성읍	동세화	서세화	토산
	6(1)	6	2	1	1	1	2	3	2	6
	안좌	하례	서미	한남	수망	동의귀	서의귀	동보한	중효	신효
	1	4	3	10	4	1	1	4	1	18
	하효	보목	토평	동홍	서홍	풍덕	호근	법환		합계
	2(1)	1	9(1)	1	10	7	25(4)	7		139(7)
대정군	예산	도순	하원	도문	대포	동중문	중문	상문	색달	상예
	2	2(1)	7	4(2)	3	1	8(8)	3	10(4)	4
	하예	사계	덕수	서광청	광청	광평	화순	동창천	안성	인성
	1	1	1	1		1	3(1)	4(3)	1	6(10)
	보성	상모	하모	일과	신평	도원				합계
	2	5(2)	3(2)	1	1	2(1)				77(33)

* 괄호 안은 「물고명부」에는 누락되고, 기타 자료에서 확인된 물고자 수

〈표 7〉 지역별 평민 물고자 수

제주군	대정군			정의군		
삼도리	광청리	하모리	일과리	성읍리	한남리	호근리
1	1	2	1	1	1	1

교민 물고자 수가 많은 지역(5명 이상)은 제주군 관내에서는 삼도/금악/고산/광령/대흘/연평리 등이고, 정의군 관내에서는 호근/신효/서홍/토평/한남/풍덕/

법환/역돌/토산/오조리 등이다. 대정군 관내에서는 성내(안성・인성・보성)/중문/색달/하원/창천/상모/하모/도문리 등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분포 집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앞에서 본 교폐 다발 지역과 교민 물고자가 많은 마을이 일치하고 있다. 물고자가 가장 많이 나온 삼도리(대로동)에는 제주교당이, 호근리(한논, 대답동)에는 정의교당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는 교당을 중심으로 다수의 주민들이 입교하였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 다수의 물고자가 나왔다.

둘째, 정의교당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호근/신효/서홍/토평/풍덕/법환리 등도 아래 <표 8>에서 보듯이 교민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표 8〉 旌義郡 관내 지역별 교민 수(1900~1901)

한 논	호 근	법 환	서 귀	홍 로	토 평	효 돈	포 목	또 미	예 촌	양 근
50(70)	2(33)	2(15)	4(11)	11(43)	3(13)	1(11)	2(6)	3(13)	・(2)	16(85)
감나무골	화 전	수 망	펄 개	밋노름	도노름	가지롬	표 전	수동개	계	
2(10)	2(16)	2(13)	1(6)	・(3)	・(9)	・(1)	・(10)	・(12)	101(382)	

셋째, 효돈의 경우 신효리 교민물고자가 많은데, 원래 교민 수가 많았던 양근리(화전촌, 교민 수 100여 명 : <표 8>) 교민들을 말한다. 하효・신효・중효리 등 효돈 지역은 하효리 오신락 노인 사망 사건 등 교회와 주민의 충돌이 심하게 드러났던 지역이다. 양근리 화전촌의 교민들에 대한 해안마을 주민들의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란의 전개 과정에서 오신락 노인 사망 사건에 연루된 교민들에 대한 처단 사례가 여럿 보인다.

넷째, 지금까지 민란 이전 제주군 관내 교민의 분포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표 6>에서 보듯이, 제주읍내에서부터 동부의 구좌・조천 지역, 서부의 애월・한림 지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교세가 확장되어 있었다. 심지어 섬 마을인 연평리(우도)에서도 5명의 물고자가 나올 정도로 교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금악리・대흘리・광령리 등 목장지대 거주 교민들 가운데 물고자가 많은 것은 화전촌 농민들의 입교가 제주군에서도 다수 이루어졌

던 결과로 보인다.

다섯째, 아래 <표 9>에서 보듯이 대정성내(안성・인성・보성리) 교민이 확인되지 않는데, 물고자가 많은 까닭(19명)은 민란 직전에 입교하거나 교회 측에 섰던 성내 주민들을 교민으로 파악한 결과로 보인다. 「대정군교폐성책」에도 대정성내 교민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5월 14일 대정성 발포 사건 당시 교민들이 성안을 장악하는 과정[44]에서 교민을 도왔던 자들에 대해 이재수가 이끄는 서진이 6월 초 대정성으로 돌아온 뒤 처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모리 이규석 3부자의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45]

〈표 9〉 大靜郡 관내 지역별 교민 수(1900~1901)

여 산	강 정	도 순	하 원	색다리	열 리	중 문	창 천	녹화지	새 당
1(20)	2(19)	1(25)	1(18)	19(46)	2(13)	・(25)	2(5)	3(16)	1(2)
모슬개	내 팟	도래물	난드르	감 산	대 포	검은질	대 평	상 천	계
4(4)	・(3)	・(25)	・(2)	・(5)	・(3)	・(1)	・(1)	・(5)	36(238)

여섯째, 금악/광령/대흘/상문(녹화지)/색달/하원/창천/신효(양근화전) 등의 경우는 원래 교민 수가 많았던 지역으로서 주로 산간지대 화전촌 교민들이다. 이들 화전촌 교민의 화전세 거부 또는 마름 기용으로 인한 향촌사회 내부의 동요가 있었다. 관・향임・주민들이 화전촌 교민을 배척했고, 화전민 사이의 내부 갈등 요소도 있었다.[46]

일곱째, 우도(연평리)의 경우 민란 전부터 있었던 교민들과 더불어 민란 당시 섬으로 피신한 교민들을 색출해서 죽인 사례로 보인다. 가파도로 피신한

44) "금년 3월에 교인 수백 명이 衆民(민회에 참여했던 대정군민)을 쫓아가서 대정군에 이르렀는데, 이때에 기를 들어 발포하고 군기고를 깨뜨리고 평민의 집에 난입하여 미곡・금전・의복・포목・닭・돼지 등 물종들을 약탈하고 또 廛舍에 들어가 백여 금에 달하는 荒貨(끈목・담배쌈지・바늘・실 등 모든 잡화)와 물건을 약탈함에 이때 인민들이 황급히 난리를 피한 즉 烟戶가 공허해졌으나 이런 일을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 상세히 알 수 없는 일."(「대정군교폐성책」, 제32조)

45) 천주교 제주교구, 『신축교안과 제주 천주교회』, 191쪽.

46) 박찬식, 앞의 책, 136쪽.

교민 조사흠을 장두 강백이가 뗏목을 타고 들어가서 죽인 사례도 보인다.[47]

마지막으로, 각 마을마다 교민들과 대립한 동임층이 교민 살해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앞의 <표 5>를 보면 가해자는 警民長, 譏察長, 洞任, 5所任[48], 頭民, 座首 등이 대분이다. 이들은 마을 내 유력계층으로서 마을의 자치운영을 주도하던 자들이다. 향임・동임층이 천주교회의 세력 확장에 가장 반발했던 계층이었음을 알 수 있다.

4. 맺음말

이상에서 1901년 제주민란 발발에 미친 교폐의 영향과 '物故者'와의 연관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천주교의 포교에 따라 향촌사회 내부의 기존질서가 동요되었다는 기존 연구 결과가 재확인되었다. 특히 마을 내 유력계층과 교민 사이, 화전민 간, 기층민 간 갈등 사례가 다시금 확인되었다. 특히 기존에 확인하지 못했던 지역별 '물고자'를 검토한 결과, 제주군의 지역별 교민 분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군의 경우에도 지역별로 광범위하게 교세가 확장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향촌사회 내부의 교・민 갈등이 심각하게 표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교폐 및 물고자가 집중된 지역은 교당 설립 지역과 화전촌 등이었다. 교당 설립 지역에서는 오신락 노인 사망사건과 같은 반천주교적 움직임이 있었다. 화전촌에서는 마름으로 고용된 교민들이 봉세관의 위세를 빙자하여 주민들에게 교폐와 세폐를 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주요 요인과 더불어 마을별로 신당을 파괴하거나 주민들에 대한 입교 강요 등으로 인해 제주도 전역에 걸쳐 저변 기층민들의 문화적 반감을 초래한 결과 민란이 발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천주교라는 외래문화의 전래와 사회세력화된 천주교회의 영향력 확

47) 천주교 제주교구, 『신축교안과 제주 천주교회』, 191쪽.

48) 5所任은 동마다 있었던 洞任을 가리키는데, 尊位・警民長・譏察・洞長・座主 등을 말한다(『續陰晴史』, 光武 2년 3월 14일).

대 과정에서 기존의 제주 지역사회의 관습과 문화에 적지 않은 타격을 가하게 되었다. 또한 경제적 이권을 둘러싼 관행과 토착권력구조에도 변화가 왔음이 확인되었다. 외래세력과 외래문화의 이입에 따라 제주 사회의 전통문화와 관습, 경제적 관행 등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1901년 제주민란을 전후하여 제주민들의 삶과 문화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봉세관과 천주교에 의해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제주민들은 고려 때 胡宗旦이 입도하여 지맥을 끊어버려 탐라의 전통을 말살하고, 2백 년 전 이형상 목사가 부임하여 신당을 모두 불태워버림으로써 토착문화를 부정한 사실을 떠올렸다. 천주교는 제주민들이 믿고 모셔온 제주신령을 '악귀'로 여겨 배격하였고, 이에 대해 제주민들은 천주교를 '제주를 빼앗기 위해' 온 것으로 인식하여 강력히 저항하였다. 지금으로부터 1백 년 전 제주는 무교와 유교가 공존하는 토착문화의 토양에 신학문과 천주교로 대표되는 근대 외래문화가 유입됨으로써 다양한 문화가 만나는 장이 되었다. 그러나 각 문화집단 간의 극단적인 상호배척으로 결국 1901년 제주민란과 같은 엄청난 문화 충돌을 빚게 되었다.

[주제어]
1901년 제주민란, 敎弊, 稅弊, 三郡敎弊査實成冊, 旌義郡敎弊卞白大槪, 三郡平民敎民物故成冊, 物故者, 문화 충돌

▌참고문헌

1. 자료

『旌義郡敎弊査實成冊』

『旌義郡敎弊卞白大槪』

『大靜郡敎弊査實成冊』

『三郡平民敎民物故成冊』

뮈텔문서(각종 선교사 서한 자료)

『修身靈藥』

『全羅南北來案』

『續陰晴史』

『駐韓日本公使館記錄』

『皇城新聞』

『濟州島現況一般』

2. 저서 및 논문

姜昌一, 「1901年의 濟州島民 抗爭에 대하여」, 『濟州島史硏究』 1, 1991.

권오정, 「19세기 제주도 촌락의 촌락내혼율과 촌락 내 혼인관계 연구－제주 대정현 사계리 호적중초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23, 2003.

金洋植, 「1901年 濟州民亂의 再檢討」, 『濟州島硏究』 6, 1989.

金洋植, 「大韓帝國期 驛·屯土에서의 抗租 硏究－內藏院 管理期(1899~1905)를 중심으로」, 『歷史學報』 131, 1991.

박일영, 「구한말 토착 종교와 가톨릭의 만남－『수신영약』(1900)을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 100년 속의 가톨릭교회』(상), 가톨릭출판사, 2003.

박찬식, 『한국 근대 천주교회와 향촌사회』, 한국교회사연구소, 2007.

_____, 「한말 천주교와 토착문화의 갈등－1901년 제주교안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9, 2001.

이창기, 「19세기말 제주도 농촌마을의 혼인양상 : 1897년 덕수리 호적중초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14, 1997.

趙景達, 「大韓帝國期の民亂」, 『朝鮮民衆運動の展開－士の論理と救濟思想』, 岩波書店, 2002.

許元寧, 『19세기 濟州島의 戶口와 賦稅運營』, 韓國學中央硏究院 韓國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6.

A study on Abuse of Catholic Church and Murderee about Chejudo Popular Uprising in 1901

Park, Chan-Sik
(Research Professor of Tamla Culture Research Institute,
Cheju National University)

This treatise focused in abuse of Catholic Church which was major cause of Chejudo popular uprising in 1901. At that time, through abuse of church, we can look furtively Chejudo's society and culture which enclosed popular uprising. For this research, I found and examined newly recording about abuse of church, murderee list etc.(三郡敎弊査實成冊, 旌義郡敎弊卞白大槪, 三郡平民敎民物故成冊).

Through this research, I could confirm following truths.

First, order of country society interior of past oscillated by missionary work of Catholic Church.

Second, place that there were much abuse and murderee was church ambit and the new developed land village. Also, cultural antipathy of Chejudo people was magnified and popular uprising broke out.

Third, because culture that came from outside(Catholicism) got transmitted and social influence of church was magnified, big impact and change were caused to Chejudo social custom and culture of past.

[Key Words]
Chejudo popular uprising in 1901, abuse of Catholic Church, abuse of tax levy, recording about abuse of church, murderee list etc.(三郡

敎弊査實成册, 旌義郡敎弊卞白大槪, 三郡平民敎民物故成册), murderee(物故者), culture collision

KCI

논문투고일 : 2008년 7월 5일 / 논문수정일 : 2008년 7월 15일 / 게재확정일 : 2008년 7월 22일